

◆ 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

제정 2016.01.01

I.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주)휴맥스(이하 '휴맥스')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협력업체 선정·운용 기준

1.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신규업체 등록 및 절차

- ① 신규 업체는 휴맥스 홈페이지 e-소싱(gpurplan@humaxdigital.com)을 통해 신규업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등록된 신규업체 중 서면 평가에 합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사 평가가 진행된다. 실사의 경우 Customized 부품은 휴맥스의 품질 Auditor가 생산 공장에 방문하여 진행을 하며, 사양품은 품질경영실에서 실사를 진행한다.

2) 업체 선정 기준 및 공정성

- ① 서면 평가 기준은 '신규 업체 필요도', '취급 품목 중요도', '업체 인지도', '재무 건전성', '회사 소개 충실도', '기타문항' 등 6개 항목으로 한다.
- ② 서면 평가 실시 후 70점 이상일 경우 잠재 협력사로 선정하고, 이후 휴맥스 품질 Auditor의 실사 평가를 통과하면 당사 협력사로 등록될 수 있다.
- ③ 구매 담당자는 품질 Auditor 또는 품질경영실 실사 평가 후 결과를 15일 이내에 업체 담당자에게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 ④ 휴맥스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서는 미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 ⑤ 당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3) 협력업체 운용

- ① 등록된 협력업체는 1년간 유효하며, 등록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1년 연장한

다.

- ② 등록된 협력업체 중 품질, 납기, 개발 지원 등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서간 협의를 통해 신규 개발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다.

4)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5)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사 또는 협력사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 부속계약,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③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④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6)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①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 ②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등록 해지 된 협력사 통지를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 휴맥스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